

붙임

핵심방역수칙(2단계)

1 유흥시설 등 (유흥·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홀덤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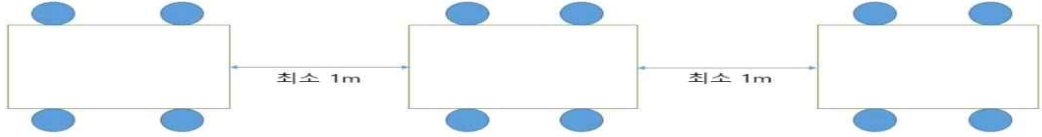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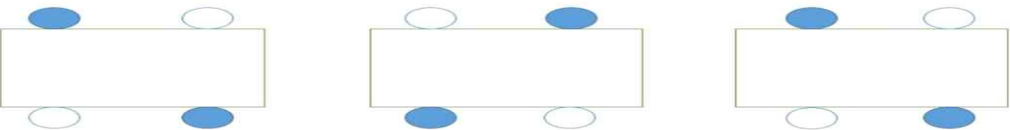

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유흥시설 등 (유흥·단란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홀덤펍)	① 운영제한시간* 준수 * 22시~익일 05시 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 ④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⑤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⑥ 방역관리자 지정 ⑦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⑧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,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⑨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⑩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⑪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⑫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** 이용인원 산정 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 ⑬ 춤추기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⑭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⑮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·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 ⑯ 실내 흡연 금지 안내	① 운영제한시간* 준수하여 이용 * 22시~익일 05시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- 전자출입명부 이용(의무) * 수기명부 작성 불가, 유흥종사자도 작성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⑤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 ⑥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⑦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),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⑧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⑨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, 아래사항 모두 준수 ·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·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(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) ⑩ 실내 흡연 금지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② 음식점 및 카페 등 (휴게·일반음식점·제과점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음식점 및 카페(무인카페 포함) (휴게·일반음식점·제과점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50㎡이상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(의무) - 150㎡미만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사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⑥ 1일 1회 이상 중·장년층 자가격리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상자 작성) ⑦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상자 작성) ⑧ 50㎡ 이상 시설 대상 I)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II) 좌석 한칸 띄워앉기 III) 테이블 간 한칸 띄워앉기 IV)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주문 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문 계산대 앞 칸막이·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(바닥표시) ⑪ 주문대기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⑬ 2인 이상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⑭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사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,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50㎡ 이상 시설 대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⑥ 주문 대기 시 이용자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⑦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(권고) ⑧ 2인 이상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
보드카페 등 홀덤·โป๊กเกอร์사업 (일반휴게음식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~⑭ 공통 ⑮ 시설 신고면적 4㎡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~⑧ 공통 ⑨ 시설 신고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뷔페·추적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~⑭ 공통 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⑮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~⑧ 공통 ⑩ 공용 접객·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⑪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		
좌석 한 칸 띄워앉기		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	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색살선-가림막)			

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